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일 : 2004. 4. 2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의 산학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7.><개정 2021.05.31>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12.17.><개정 2021.05.31>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길 133, 대학 내에 둔다. <개정 2012.04.19.><개정 2015.12.17.>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지적재산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 훈련
7.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8. 국내·외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수행 및 지원 업무(저소득 개발국가 구호 활동 및 연구사업 등) <개정 2015.12.17.>
9.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신설 2017.09.13.>
10.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설치 및 수탁,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7.09.13.>
11.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6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6조(수입) 다음 각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익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에 의한 수입금

제7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6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8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학 회계부서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이하 “회계처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04.19.>

제12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인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결산) ①단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결산 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 및 부속명세서는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④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서를 5년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결산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4조(단장) ①산학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④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⑤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부단장) ①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단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총장은 대학교 소속의 교직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8.06.05.>

제17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에 따라 이외의 사업부서 및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①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①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명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기획관리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개정 2019.02.26>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6.05>

⑤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2조(의사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회의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상금

제24조(보상금의 지급) ①제6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한다.

③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 제6장 보칙

제2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해산) ①산학협력단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②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제27조(공고의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2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수행중인 제4조의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③(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④(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⑤(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